

#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 資料編(11)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 臨時齒醫務分科委員會

(1949·4·10現在)

#### A) 委員會規定

臨時齒醫務分科委員會規定

第1條 臨時齒醫務分科委員會(以下委員會라稱함)는 社會部에 屬하며 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齒醫務行政에 關한 重要政策을 審議한다.

第2條 委員會는 齒醫務政策에 關하여 社會部長官에게 建議할수있다.

第3條 委員會는 委員長1人 委員6人以內로 組織한다.

第4條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委員은 齒醫務에 關하여 學識 또는 經驗이有한者中에서 社會部長官이 委囑한다.

第5條 社會部長官 保健局長 醫務課長은 委員會에 陪席하여 發言할수있다.

第6條 委員은 名譽職으로한다.

#### B) 委員會委員各簿(無順)

委員長 金溶濬 大韓齒科醫師會長

委員 朴明鎮 서울齒科大學長

“ 李有慶 서울齒大附屬醫院長

“ 李迪柱 女醫大齒科學教授

“ 安炳植 서울齒醫會委員長

“ 文箕玉 石泉齒科醫院長

“ 曹基沆 春堂齒科醫院長

#### C) 委員會經過

委員會名稱의 臨時라고 冠詞가 附添된 理由로는 將次 保健部가 獨立되어 正式으로 任命되기前까지 暫問의 存在임으로 此를 臨時 齒醫務分科委員會라고한다. 此는 4月10日에 社會部長官으로부터 委囑되어 各委員이 承諾하여서 組織되다.

가. 西紀1949年5月2日 月曜日 午後3時半 社會部 應接室에서 第1回 會合이 開催되다.

出席委員金溶濬, 李有慶, 文箕玉, 安炳植, 李迪柱 등 5人(缺席委員朴明鎮, 曹基沆2人)下에 徐丙瑞齒醫務係長의 開會人事에이어 朴柱秉保健局長은 分科委員會의 發展을 祈願하며 齒醫界의 權威者諸賢들의 諮問을 바라다지 않는다는 人事가有하고 會順에 따라

△ 臨時議長에 李有慶被選되고 委員會選定에 들어가 投票結果 出席委員半數以上으로 大韓齒醫會會長金溶濬 被選되다.

△ 委員長金溶濬 就任人事가 있고 書記로 安炳植을指名(但記錄은 齒醫務係에서 代行할것).

#### △ 討議事項及決議事項

① 限地齒科醫師試驗存續問題 當分間保留하기로함.

② 齒科醫師檢定試驗要綱=當局에서 前例에依하여 發表하기로함.

③ 試驗及委囑=齒醫務係에서 適當히 委囑하기로함.

④ 委員會 會合日時=定期的으로決定 每月第1, 第3水曜日 午前9時半 開催키로決議함.

나. 1949年5月20日 金曜日 第2回會合 開催하다. 出席委員全員出席 委員會規定及 前回會議錄朗讀

#### △ 討議事項及決議事項

① 限地齒醫制度復活施行與否=長時間討議結果 次回로 廻附함.

② 齒科醫師檢定試驗에 男女中學校 4年制以上 卒業者로서 應試資格을 與함에對하여 建議

③ 委員會開催日時は可

案件을 各委員에게 미리通知하여 研究 期間을 주게할것.

④ 西紀1945年3月에 日本女子齒專卒業豫定者 金彩榮

에 그間 事情으로 卒業期日數十日前に 歸還後 1947年度의 卒業證書에 對한 免許受與與否에 關하여 <日本에 照會키로>

⑤ 保健部 獨立에 따르는 齒醫務行政機構에 關하여 = 委員會로서 建議文을 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最少限 齒醫課及口腔衛生課의 2課設置를 建議文提出할것.

다. 6月15日水曜日 午前9時半 第3回齒醫務分科委員會 開催 出席委員金溶瑤, 李有慶, 李迪柱, 安炳植, 曹基沆 前回會議錄朗讀

#### △ 討議事項及決議事項

- ① 第1部試驗合格者及科目合格者를 審査 第1部合格者 3名 科目合格者20名
- ② 1948年施行限地齒科醫師第1部合格 第2部落第者6名의 陳情에 對하여 限地齒科醫師試驗問題와같이 次回에 保留
- ③ 口腔衛生強調週間募集作文及 標語入選決定에 對하여 = 齒醫務係에서 入選者約2倍數를 選出하여 委員會에 提出 委員會席上에서 各入選者를 決定키로 決議함.

#### 韓齒消費部定款草案

大韓齒科醫師會는 1949年6月11日字로 消費組合에 關한件을 各道齒科醫師會에 發送하였는데 그草案은 다음과 같다.

##### □ 第1章

- 第1條 本部는 大韓齒科醫師會 消費部라 稱함.
- 第2條 本部는 部員에 齒科機材及生活必需品를 斡旋 供給하여 隣保相助의 精神으로 共同利益을 增進하는 事業을 目的으로함.
- 第3條 本部의 區域은 南韓一圓으로함.
- 第4條 本條는 大韓齒科醫師會內에 置함.
- 第5條 本部員은 大韓齒科醫師會 會員에 限함.

##### □ 第2章

- 第6條 本部資金은 每株5千圓으로함.  
(但 1人2株以上10株以內)
- 第7條 本部의 加入者는 申請書에 全支拂을 要함.
- 第8條 本部는 事業年度를 每年9月1日로 始하여 翌年 8月末日로함.
- 第9條 本部利益金은 4分之1以上을 事業準備金으로 積立하고 殘金을 出資額에 依하여 配當함.
- 第10條 事業準備金은 損失의 補充에 充當함.

##### □ 第3章

- 第11條 本部에 左의 役員을 置함.  
理事長 1名  
常務理事 1名  
理事 若干名

#### 監 事 2名

第12條 理事長은 本部를 代表하고 事務를 總理함. 常 任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業務를 執行하고 理事長有 故時 此를 代行함. 監事는 財產及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함

第13條 役員의 任期는 2年으로하고 役員은 大韓齒科 醫師會에서 選任함.

##### □ 第4章

- 第14條 本部의 事業은 如左함.  
1 部員에게 齒科機材斡旋及 配給  
2 部員의 生活必需品斡旋及 配給  
3 部員間의 慶吊表示  
4 其他 部員의 共同利益을 爲한 事業

第15條 本部事業狀況은 韓齒總會에서 報告함.

##### □ 第5章

- 第16條 部員이 株券을 他人에게 讓渡時는 本部의 承認을 要함.
- 第17條 部員脫退及死亡時는 其要求에 依하여 脫退事業年度 財產狀況에 따라 支拂함.  
但 除名에 依하여 脫退時는 出資額에 限하여 支拂함.
- 第18條 本部解散時는 債務를 完濟하고 殘餘財產은 出資額에 依하여 分配함.
- 第19條 本款에 規定이 없는 事項은 一般慣例에 依함.
- 第20條 本規定款은 總會에서 修正함.

#### 全北道齒臨時總會

全羅北道齒科醫師會에서는 (1949) 9月25日 全州 大同 齒科醫院長 崔三涉 自宅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同會 消費部 定款을 討議通過시킨다음 役員選出이 있었다.

▲ 全羅北道齒科醫師會 消費部役員 = 部長林澤龍, 常務理事崔三涉, 尹麒炳, 蘇貞敬, 臨事高漢俊, 崔希烈 李敏五, 鄭潤鈺, 書記 崔三涉時兼務 △事務所 全州市中央洞34 大同齒科醫院內

#### 全南道齒臨時總會

全羅南道齒科醫師會 臨時總會는 (1949) 11月6日 上午 11時부터 光州市廳 會議室에서 來賓 韓道保健課長外3名과 會員25名(委任狀包含) 參席下에 開催되어 먼저 役員 改選이 있은다음 會則修正 其他事項을 討議可決하고 下午 2時 閉會後 多來館에서 懇親會가 있었는데 改選된 役員 및 議案審議狀況은 다음과 같다.

##### ① 役員改選

▲ 會長盧基燮, 副會長曹珣, 同金性度, 總務黃洞淵, 會計崔丙鈺, 幹事金季洙, 同林孟基, 學術部長金大鍾  
光州支部長 林俊鎬  
木浦支部長 金喜忠

順天支部長 黃亮燮

全南道齒의 事務所가 <光州>에 있으면서 會長盧基燮이 <本浦>에 있는 關係로 道齒運營上 多少의 支障이 없지않다하여 5月8日 열린 定期總會時에 曺副會長說이 濃厚하였으나 某의 反對로 實現되지못하고 會長에 盧基燮, 副會長에 曺副會長이 再選되었던것이다. 그러나 其後 曺副會長의 辭任으로 不得已 金季洙가 副會長에 就任하였던가 意外로 某某役員들의 辭意表明으로 道齒運營에 暗影을 던지고있었으며 今般 臨時總會에서 副會長에 曺副會長이 再選되자 曺副會長은 또다시 辭意를 固執하였으나 本浦側諸會員의 懇曲한 勸誘로 드디어 副會長就任을 受諾하였고 이번 役員改選에서 限地齒科醫師林孟基가 幹事에 被選된것은 興味있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過去에 있어서 全南道齒는 齒科醫師와 限地齒科醫師와의 差別待遇로 말미암아 그들사이의 親睦을 볼수없었기 때문이다. 今年度 定期總會以後 役員會決議로서 限地齒科醫師에 對한 待遇改善을 採擇되어 그것이 今般 臨時總會에서 確認될뿐 아니라 役員으로 限地齒科醫師를 選出한것은 劃期的事實이 되지않을수 없을것이다. 앞으로 曺副會長以下 諸役員의 努力과 限地齒科醫師들의 協調로 全南道齒前途는 明朗해질것이 豫想된다.

② 會則一部修正

第2條中<人民>을 <國民>으로, 第4條中<光州府>를 <光州市>, 第41條會員入會金<2百圓>을 <1千圓>으로, 또는 特別會員入會金<1百圓>을 <5百圓>으로, 第42條를<會費는 年額會3千圓也로하되 每年總會時 納付하기로함>으로, 第50條3項에<支部의 新設 或은 管轄變更할때에는 總會의 決議에 依함>으로 各各 修正할것을 可決.

③ 無資格者取締의件

各會員이 同該當者情報을 各支部와 本會로 報告하여 本會는 道保健課로 交涉하되 成果가 過少할時는 大韓齒科醫師會와 保健部에 報告함으로써 善處를 要望하기로 決意.

④ 其他事項

가. 消費組合을 本會內에 設置할것을 可決.  
나. 會費未納者에게는 會則 第47條 第2項을 發動하여 <1年間 會員諸權限中止>할것을 可決.  
다. 重大한 役員會의 決議인 準會員의 配給과 徵收를 均等케 하며 準會員中 1名을 本會幹事로 選任하자는것을 附議한바 滿場一致로 可決.  
全南道齒는 臨時總會후의 첫 役員會를 11月19日 下午 5時부터 曺副會長宅에서 開催하였는데 臨總會에서 決議된 諸案件의 實行方法을 討議可決하고 同7時 散會했다.

麗水叛亂事件—其後의 麗水

其後의 麗水는 어찌되었는가. 그보다도 診療所와 家財一切을 불태우고 虐殺과 彈雨속에서 알몸뚱이가 되어 開業을 못하고있던 齒科醫師 鄭東浩, 金光植兩人은 어떻게 살고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關心事가 되지않을 수 없다.

麗水를 訪問한것이 (1949)11月23日이니 생각만해도 몹시 리처지는 叛亂事件이 突發한것도 어느덧 1年하고도 1個月前의 惡夢이 되고말았다. 晚秋의 麗水의 하늘은 限 없이 맑고 높았다. 鍾鼓山의 山容은 慈母와같이 부드럽고 바다물은 處女와같이 얇진하였다. 그렇다. 하늘도 산도 바다도 1年前의 피비린내나는 事件을 잊은듯 平和의 象徴이 되고있다.

그러나 海岸地帶를 도리켜보라. 近代式建物이 攄比하던것은 한때의 꿈이었고 至今은 板子집이 無秩序하게 서있으며 燒失當하지않는 高臺의 建物前面壁에는 彈痕이 아직도 남아있고 警察署廳舍는 뼈다구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다. 叛亂當時燒失된 建物이 約2千戶라하는데 이곳에서 數百, 數千의 同胞가 죽음을 당했을것이니 倭帝의 사슬을 벗어난 이땅에 왜 이런慘劇이 일어났던가. 憤하고 슬픈일이다.

그렇다고해서 麗水市民의 얼굴에 悲觀의 暗影은 別로 없었다. 板子집 商人들은 손님接待에 바쁜듯분주했으며 飲食店에서는 노래소리도 들려오고 이곳저곳에서 2층집세우는것을 볼수도있었다. 治安狀態는 軍警의 철통같은 警戒로 不安이 一掃되고 새벽空氣를 뚫고들려오는 大韓青年團員들의 노래소리는 마음흔든한 모습이 되고 있으며 特히 警察은 國民의 품안에 接近하고있었다. 全南一帶가 全部그렇긴하지만 麗水의 警察署나 支署도 門前에 써붙인標語<우리는 여러분의 경찰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친절히 보호합니다. 어떠한일이든지 경찰에 상의하십시오>는 보는사람으로하여금 好感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警察이 國民을 爲하여 努力하고 있다는것을 엿볼수있었다.

如何間 麗水는 나날이 復興되고있다. 그리고 市民들은 구태여 1年前의 慘劇을 想起하는것보다 오직 알날을 爲한 建設理念에 불타고있는것같이 보이었다.

齒科醫師 鄭東浩, 金光植兩人도 한때는 집을 잃고 診療機具를 태우고 너무나 激烈한<살>의 波濤속에서 갈바를모르고 있다가 現在는 板子집 診療所나마 마련하여 麗水8萬市民의 口腔衛生을 爲하여 奮闘하고있는데 政府로부터 診療所建築費로 不遠間 每人當3百萬圓式 貸與을 받게 되었다고한다.

한편 各道·市齒科醫師會에서는 鄭, 金兩齒科醫師에

